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목 차>

-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 2.택배업 표준계약서의 기재 사항
- 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 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육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소라
	담당부서 (과)	생활물류정책팀		직급	주무관
	국장	김완국		연락처	044-201-4154
	과장	최정원		이메일	suiren@mail.go. kr

2026. 01. 28. 작성

물류정책관(직무대리)

성명 김완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2.규제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4																	
	3.위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음식배달 등 배달업 특성 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 (이하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 및 피해자 보상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을 의무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 ○ 이에,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5) 개정('25.12.2.)																	
	7.규제내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소화물배송대행업인증사업자</td><td>8개 인증업체('25년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td><td>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영업점</td><td>추정불가</td></tr><tr><td>관련기관</td><td>국토교통부</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업인증사업자	8개 인증업체('25년 기준)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	피규제자	영업점	추정불가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업인증사업자	8개 인증업체('25년 기준)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																	
피규제자	영업점	추정불가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9.규제목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미해당 해당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운전가능 연령 범위 등 해당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보시스템 구성·운영에 필요하다

현 행	개 정 안
	<u>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u>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
	<u>시스템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u> <u>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u>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달업은 대표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안전에 취약**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5.3조('18) → 17.3조('20) → 28.7조('21) → 32.4조('23) → 37.0조('24)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 27.8천명('20) → 27.0천명('21) → 23.9천명('22) → 21.7천명('23) → 20.2천명('24)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 52.4%('25.1월기준, 보험개발원)

- 이에,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5)을 개정('25.12.2.)하여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 제고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
규제대안 1	○ 사업자가 종사자등과 위탁(용역)계약 체결 전,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25.12. 법 개정) - 국토부장관은 사업자가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 관계기관 등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 (8개 업체)	2026.1.5. 서울역, 대면회의	○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 수용 - 기획예산처와 정보 시스템 구축 협의 추진

3. 규제목표

-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정착하여 교통안전 및 피해자 보상을 강화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사업자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불필요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중기영향평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없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자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관리 감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25.12.2.)에 따라 사업자의 종사자등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3. 종합결론

-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5) 사업자들은 보험 미가입 종사자등과 위탁계약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함

- 사업자가 신속히 종사자(약 35만명)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협조가 반드시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택배업 표준계약서의 기재 사항														
	2.규제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3.위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갑과을의 위치 등을 이용하여 위탁구역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 계약 체결 문제 발생 ○ 이에, 사업자·영업점·기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 (‘25.12.2, 법 개정) ○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종사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														
	7.규제내용	○ 사업자·영업점·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중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계약기간, 위탁구역 등)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택배서비스사업자</td><td>20개사</td></tr><tr><td>피규제자</td><td>영업점</td><td>약 4천여개(추정)</td></tr><tr><td>이해관계자</td><td>택배서비스종사자</td><td>약 76,000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택배서비스사업자	20개사	피규제자	영업점	약 4천여개(추정)	이해관계자	택배서비스종사자	약 76,000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택배서비스사업자	20개사														
피규제자	영업점	약 4천여개(추정)														
이해관계자	택배서비스종사자	약 76,000명														
9.규제목표	○ 택배사업자-영업점-종사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하여 당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사례가 있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술한 용어의 정의</u> 가. <u>“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u> 나. <u>“집화”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하차,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u> 다. <u>“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택배기사 1인당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u> 라. <u>“배송”이라 함은 분류된 화물을 택배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차량운행을 통해 운송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인</u>

현 행	개 정 안
	<u>도하는 것을 말한다.</u> <u>마. 택배의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및 택배운임 수취, 고객응대, 스캔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u> <u>2.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기간</u> <u>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위 탁지역 또는 담당구역</u> <u>4.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u> <u>5.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분류작업 수행 여부 및 분류 수수료에 관한 사항</u> <u>6.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u> <u>7.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시 수탁자의 최대 작업 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 등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u> <u>8.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u>

현 행	개 정 안
	<u>계약 시 법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기재한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u> <u>9. 별도의 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본 계약과의 관계, 부속합의를 통해 수탁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합의서 또는 부속합의에 관한 사항</u>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위탁구역을 명시하는 않는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 침해 사례 발생
- 이에, 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 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25.12)
-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종사자 등 당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종사자 간 위수탁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만큼 사업자,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적절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를 통해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의 의견 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법 개정으로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신설하는 만큼 사업자와 종사자가 원활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갈등 최소화 및 종사자 권리 보호 강화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 개정으로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신설됨으로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정한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별도의 기술적인 규제는 없으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불필요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제에 경쟁적인 요인은 없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불필요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로 미해당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납품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수탁계약 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점,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영업점 및 종사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줄고, 영업점-종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한 자원 투입이 줄어드는 편익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가 개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5조 및 제51조에 따라 위수탁계약 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취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여 실효성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업자·영업점·기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5.12.2. 공포, '26.6.3.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매년 시행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수탁계약서에 반영했는지 검토하여 법령 준수 여부 지속 관리

3. 종합결론

-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위수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상호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종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인 만큼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2.규제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3.위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음식배달 등 배달업 특성 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 (이하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 및 피해자 보상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을 의무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 ○ 이에,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5) 개정('25.12.2.)																	
	7.규제내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소화물배송대행사업인증사 업자</td><td>8개 인증업체('25년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td><td>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영업점</td><td>추정 불가</td></tr><tr><td>관련기관</td><td>국토교통부</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인증사 업자	8개 인증업체('25년 기준)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	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	피규제자	영업점	추정 불가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인증사 업자	8개 인증업체('25년 기준)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	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																	
피규제자	영업점	추정 불가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9.규제목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미해당 해당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

현 행	개 정 안
	<u>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일이 10일을 경과하지 않은 서류에 한한다)</u> <u>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당해 보험등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발급일이 10일을 경과하지 않은 서류에 한한다)</u> <u>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보험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등의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u> <u>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u>

현행	개정안
	<u>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u> <u>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u> <u>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u> <u>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u> <u>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u>

현행	개정안
	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이용환경의 미비, 보험기관 등의 처리 지연 및 확인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 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5 영업일의 범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현행	개정안
	<u>증명하는 서류</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달업은 대표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안전에 취약**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5.3조('18) → 17.3조('20) → 28.7조('21) → 32.4조('23) → 37.0조('24)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 27.8천명('20) → 27.0천명('21) → 23.9천명('22) → 21.7천명('23) → 20.2천명('24)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 52.4%(25.1월기준, 보험개발원)

- 이에,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5)을 개정('25.12.2.)하여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 제고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 1	대안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
	내용	○ 사업자가 종사자등과 위탁(용역)계약 체결 전, 종사자등의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25.12. 법 개정) - 종사자등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 시기 및 주기, 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 (8개 업체)	2026.1.5. 서울역, 대면회의	○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	○ 수용 - 기획예산처와 정보시스템 구축 협의 추진

3. 규제목표

-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정착하여 교통안전 및 피해자 보상을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사업자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하고 있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

* (세부사항) 종사자 보험가입 및 보상대상 자격 유무 확인 서류, 보험 유효성 확인 주기, 보험가입여부 확인 방법(서류확인 또는 정보시스템 이용)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업자의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불필요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사업자의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중기영향 평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자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종사자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관리감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자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종사자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25.12.2.)에 따라 사업자의 종사자등 보험등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사업자가 종사자등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미가입 종사자등과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 처분 예정

3. 종합결론

-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5) 사업자들은 보험 미가입 종사자등과 위탁계약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함

- 사업자가 종사자등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상 혼선을 줄일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육														
	2.규제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5														
	3.위임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음식배달 등 배달업 특성 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 (이하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종사자 대 상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 ○ 이에, 사업자가 신규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6) 개정('25.12.2.)														
	7.규제내용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소화물배송대행사업인증사 업자</td><td>8개 인증업체('25년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td><td>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영업점</td><td>추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인증사 업자	8개 인증업체('25년 기준)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	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	피규제자	영업점	추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인증사 업자	8개 인증업체('25년 기준)														
피규제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	약 35만명(산재보험가입자수, '25.1분기 기준)														
피규제자	영업점	추정 불가														
9.규제목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6에 따라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u> 1. <u>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및 도로관계법령</u> 2. <u>교통안전에 관한 사항</u> 3. <u>소화물 배송 요령에 관한 사항</u> 4. <u>운송수단 응급처치방법</u> 5. 「<u>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u>」 별표5 제4호가목에 따른 교육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u> ③ <u>교육실시기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달업은 대표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안전에 취약**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5.3조('18) → 17.3조('20) → 28.7조('21) → 32.4조('23) → 37.0조('24)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 27.8천명('20) → 27.0천명('21) → 23.9천명('22) → 21.7천명('23) → 20.2천명('24)

- 이에, 사업자가 신규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6)을 개정('25.12.2.)하여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운행 지원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육
규제대안 1	내용	○ 사업자가 신규종사자와 위탁(용역)계약 체결 전, 신규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25.12. 법 개정) - 신규 종사자 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실시기관 등 세부사항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 (8개 업체)	2026.1.5. 서울역, 대면회의	○ 교육이수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방안 마련 필요	○ 수용 -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규제목표

- 신규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 운행 지원을 통해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신규 배달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 시간 및 교육실시 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하고 있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 (교육내용) 생활물류법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시간) 4시간 이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신규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불필요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신규 배달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 시간 및 교육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하는 사안으로 중기영향 평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화물자동차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없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자가 신규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관리 감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자가 신규 배달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25.12.2.)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을 의무화하고, 신규 종사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사업자의 신규 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 예정

3. 종합결론

-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신규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9조의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과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규 배달 종사자가 이수해야 할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이수 시간 및 교육실시기관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